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최혁진 · 송재봉 · 조계원

강득구 · 안호영 · 이수진

정혜경 · 황운하 · 손 솔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강화)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여야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제출, 이행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강화)</u> <u>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u>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생략) 2. ~ 11. (생략)	<u>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제출, 이행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0조(벌칙) ----- ----- ----- -----. <u>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11. (현행과 같음)
--	--